

kiri 보험연구원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제12회 KIRI 보험법 세미나

보험사기 양형기준의 필요성

2024. 7. 23. | 법무법인(유) 세종 하태헌 변호사

목차

- I. 보험사기의 특수성
 - II. 보험사기에 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
 - III. 보험사기에 관한 양형인자
 - IV. 사기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개선안
- [별지]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I.

보험사기의 특수성

I. 보험사기의 특수성

01 보험사기의 정의 및 현황



보험사기행위



1조 1,164원



109,522명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 제1호)

- 보험사기의 증가, 지능화, 집단화, 폭력화
 - 보험금 누수,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문제
 -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보험사기 범죄의 유형인 ① 사기적 보험계약 체결, ② 고의사고, ③ 허위사고, ④ 보험사고 과장 중에서 ② 내지 ④ 유형이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해당)
-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금액 및 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 보험사기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중 사건명 기준으로 가장 많은 범죄 : 5년간 구공판 기준 6,209건
- 2023년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 1,164원, 적발인원은 109,522명

I. 보험사기의 특수성

02 형법상 보험사기와 특별법상 보험사기의 차이점

- 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다음 측면에서 형법상 사기와 다름
 - ① 구성요건을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정하여 형법상 사기죄보다 기망행위의 대상 및 상대방을 구체화
 - ② 실행행위로서 **보험금의 청구** 행위 및 취득 결과를 별도로 요구
 - ③ 법정형에 있어서 **강화된 벌금형**을 두고 있음(일반사기 2천만원 이하, 보험사기 5천만원 이하)
 - ④ 이득액(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아닌 특별법 제11조 적용
 - ⑤ 형법상 사기는 개인적 법인으로서의 재산권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특별법상 보험사기는 보험제도 및 보험산업 등의 사회적 법익 또한 보호법익으로 함
- 반면 **징역형의 법정형은 동일**하고, 이득액 5억원 이상의 경우 특경법과 법정형이 동일
- **현행 양형기준은 일반사기/조직적사기 유형만 설정하고(별지 참조),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사기죄의 관한 양형기준은 특별법 제정 이전에 설정되어 개정되지 않았고, 징역형의 법정형이 일반사기와 동일하여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이 원인

I. 보험사기의 특수성

03 보험사기 처벌 실태

✓ 최근 3년간 보험사기 및 사기 선고 결과(제1심)

-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죄에 비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훨씬 높고, 유기징역의 실행이 선고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상대적으로 경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연도	구분	계	자유형		재산형	재산형 집행유예	무죄	기타
			유기징역	집행유예				
2020	사기	44,056	25,732 (58.4)	9,732 (22.1)	4,222 (9.6)	121 (0.3)	1,127 (2.6)	3,122
	보험사기	1,310	310 (23.7)	393 (30.0)	459 (35)	18 (1.4)	42 (3.2)	88
2021	사기	44,949	266,656 (59.3)	10,395 (23.1)	3,789 (8.4)	125 (0.3)	1,309 (2.9)	2,675
	보험사기	2,011	406 (20.2)	542 (27.9)	880 (43.8)	10 (0.5)	61 (3.0)	112
2022	사기	41,733	25,393 (60.8)	9,405 (22.5)	3,040 (7.3)	89 (0.2)	1,305 (3.1)	2,501
	보험사기	2,017	453 (22.5)	602 (29.8)	784 (38.9)	14 (0.7)	59 (2.9)	105

출처: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사법연감(통계) 2017년~2022년

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

II. 보험사기에 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

01 보험사기에 관하여 현재의 유형분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01 보호법익 차이

- 보험사기는 피해자의 개인적·재산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상 등을 초래하여 보험사기의 중국적인 피해자는 다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사회적 법익 또한 침해
- 보험사기방지법의 제정 이유 및 그 목적상 관련 다수의 이해관계인 및 보험제도 자체가 보호대상

02 행위태양 차이

- 보험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실행행위로서 보험금의 청구 및 취득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행위태양 측면에서도 일반사기와 명확히 구분
- 의사, 보험모집인 등 전문가 또는 업계 종사자 등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사고 유발을 위해 별도 범죄가 파생되는 경우도 많음

03 형태 차이

- 보험사기의 경우 단독범행으로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약 53%), 조직적사기의 범죄유형에 포섭할 수도 없음

II. 보험사기에 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

02 보험사기에 관하여 현재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개별 양형인자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01

- 현행 사기범행 양형기준에서는 감경요소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를 두면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 적극적 기망에 대응하는 소극적 기망의 요소로 봄
- 그러나 일반사기와 달리 보험사기에서 고지의무 위반은 가입 당시부터 보험사기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 기망으로 위법사항의 핵심이고 주된 행위태양임
- 따라서 고지의무 미이행을 보험사기죄에서 감경요소로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

02

- 현행 사기범행 양형기준은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및 '인적신뢰관계의 이용'을 두고 있음
- 위 양형인자는 주로 개인피해자를 염두에 둔 것. 그러나 이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보험사기죄의 양형인자로 사용하기는 부적절

II. 보험사기에 관하여 별도의 양형기준 유형을 분류할 필요성

03 소결

「01 일반사기」 유형과 「02 조직적 사기」 유형만 있는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에(별지 참조)
「03 보험사기」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 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다만 양형위원회는 별도 유형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입장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01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 고의사고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것, 허위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는 것
- 고의사고, 허위사고, 사고내용 조작 순으로 불법성의 정도가 중함
- 고의사고는 중대한 다른 범죄를 수반하는 악질적인 범행
- 사고유발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적극적 고의와 범행의 은폐가 반드시 수반
-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함

➔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함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02 '보험가입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 범행이 계획적이고 적극적 고의에 의한 범행
- 보험금의 편취를 위해 보험가입시부터 보험금 청구시까지, 고지의무 미이행, 보험사고 유발, 사고내용 조작 등 다수의 기망행위가 수반됨
- 특히 보험금 편취라는 최종 목적을 위해 고의사고 또는 허위사고를 유발할 동기가 매우 큼
- 일반 보험사기와 비교하여 계획적 범행에 의해 보험금 편취의 가능성이 높고 피해액이 증가할 수 있음

➔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함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03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및 부수적인 범죄가 수반된 경우'

- 보험사기를 위하여 살인·상해, 고의충돌 등의 범행을 한 경우에는 보험사기죄와 살인죄, 상해죄, 손괴죄 등의 경합범으로 처벌될 것임. 살인범죄와 달리 **상해범죄 및 손괴범죄**는 '보험금을 노린 경우'가 가중 양형요소로 인정되지 않음(살인죄는 '비난 동기 살인'에 포함하여 별도 양형요소로 규정)
- 살인,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범인도피, 증거인멸, 음주 및 무면허운전, 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진단서 작성,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 보험사기를 위해 허위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사고내용을 조작한 경우 불법성이 매우 중함. 그러나 수사 및 기소 재량에 따라 실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에서 별도 기소되지 않는 경우 이를 가중 양형요소로 추가할 필요

➔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함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04 '직업적 전문성을 이용하여 기망한 경우 및 피해자의 직원인 경우'

-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전문직종 또는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전문가 및 관계자는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더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 그럼에도 이들이 관여하는 경우 적발이 어렵고, 편취금액이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더 심각함
- 이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2024. 1. 25. 가결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에서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 부분이 삭제되어 최종 반영되지 못함 → 구체적 재판 시의 양형을 통해서라도 처벌을 강화해야 할 필요

→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해야 함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05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고지의무 대상임을 알면서 고의로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는, 이미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장차 보험사기의 실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더욱이 실제 그러한 부실 고지를 이용하여 보험금 편취로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과 폐해가 극히 중함
- 보험자 내지 다른 보험계약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여 그 보험계약자간 급부의 균형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점, 보험제도에는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악의적 보험가입자가 보험을 의도적으로 악용할 위험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지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큼
-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례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준법의식이 부재한 상황
- 일반사기에서 소극적 기망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고지의무 미이행'과는 개념이 다르고, 오히려 **적극적, 계획적 기망의 지표**로 보아야 함

➔ 이를 가중요소로 규정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에서는 **삭제**해야 함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06 '상대방 동의 없는 공탁'



- 2022. 12. 9. 경부터 시행된 개정 공탁법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함
- 공탁법 개정 취지는 피해자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하면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기 위함임
- 보험사기의 경우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필요하지 않음
-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및 공탁법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이나 개정의 정 없이도 형의 감경을 받기 위하여 형사공탁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 그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함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상당한 피해회복')에서 '보험사기의 경우 상대방 동의 없는 공탁'은 제외해야 함

III. 보험사기 범죄에 관한 양형인자

07 '일부 피해자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 현행 양형기준('처벌불원'이 감경요소)에 따르면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보험사기에서 일부 보험회사의 처벌불원 의사만 있는 경우에도 형이 감경되는 것이 가능
- 피해금액이 적은 보험회사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해회복을 하고 해당 보험회사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감경요소로 인정된다면 다른 고액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형이 감경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
- 이를 악용하여 피해금액이 적은 보험회사의 피해만 회복할 가능성도 존재함

→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중 감경요소('처벌불원')에서 '일부 피해자만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하거나, 다수의 보험회사들 중 그 피해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IV.

사기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개선안

IV. 사기범죄 [양형인자의 정의] 개선안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삭제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고의로 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허위로 사고를 가장한 경우' 추가
-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시부터 보험사기 목적으로 다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추가
- '보험사기 범행에 수반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부수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 추가
-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추가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사. 내부비리 고발

아. 처벌불원

-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에 있어 일부 피해자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추가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보험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공탁은 제외한다.' 추가

차. 합의 시도 중 피해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타. 단순 가담

파. 진지한 반성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별지.

현행 사기범죄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 1년	6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월 - 2년6월	1년 - 4년	2년6월 - 6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1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7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년 - 6년	5년 - 8년	6년 - 9년
5	300억 원 이상	5년 - 9년	6년 - 10년	8년 - 13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악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입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 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칙을 저지른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처벌불민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례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2 | 조직적 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년6월 - 3년	2년 - 5년	4년 - 7년
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2년 - 5년	4년 - 7년	6년 - 9년
4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4년 - 7년	6년 - 9년	8년 - 11년
5	300억 원 이상	6년 - 10년	8년 - 13년	11년 이상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악한 경우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사실상 입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단순 가담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처벌불민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인적 신뢰관계 이용
	행위자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례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약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일반사기

가. 제1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이득액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의미한다(이하 같음).

나. 제2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 제3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라. 제4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마. 제5유형

- 사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02 | 조직적 사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예를 들면, 전화금융사기단의 전화금융사기, 사기도박단의 사기도박, 보험사기단의 보험사기, 토지사기단의 토지사기, 조직적인 국가보조금사기, 기획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의 다단계사기 등).
- 제1유형 내지 제5유형의 정의는 일반사기의 그것과 동일하다.

양형인자의 정의

가. 기망행위의 정도가 악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원래 보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사정 변경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조금을 계속 교부받은 경우, 지속적인 금전거래 중간에 사업상 생김 문제를 고지하지 않고 계속 금전거래를 한 경우 등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래행위의 초기에는 기망행위가 없었으나 나중에 기망행위가 있게 된 경우,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의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소극적인 기망행위로 편취한 경우(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등)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
 - 기망의 내용이 실제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손해액의 약 1/3 이하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가 향후의 부당한 이득을 노리거나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 불법적인 자금으로 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큰 규모의 이득을 노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재물을 교부한 경우
 - 피해자의 비합법적 이용추구 의도나 동기가 범행을 야기하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예견하고 있었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 회사가 자금정색으로 파산하게 하거나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게 한 경우
 - 피해자 회사의 신뢰추락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한 경우
 - 연쇄부도를 야기한 경우
 -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상실하게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금융, 증권, 무역, 회계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바.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죄의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여 피해 회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사.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정의

아.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자.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한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차.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기범행인 경우로서,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도박 등 불법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다른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한 의도에서 그 재산을 편취한 경우
 - 조직폭력 집단 간 세력 다툼에서 우세를 차지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타. 단순 가담

-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kiri 보험연구원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감사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www.shinkim.com T 02 316 4114 F 02 756 6226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